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
(배명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7년 11월 일
제 출 자 : 배명호 의원 외 6인

1. 제정이유

○ 지역발전의 미래성장 동력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인구의 효율적인 증대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을 마련하여 우리군 전입에 따른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지원 대상 및 내용(안 별표) ※ 2018. 1. 1.부터 시행

시책명	지 원 대 상	지 원 내 용
전입세대 정착지원 사업	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타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 관련 법령에 따라 군으로 전입한 후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	· 전입세대에 대해 1명당 지원금 10만원 지급 (세대별 최대 50만원 지급)
인구증가 시책유공 유관기관·기업 지원 사업	제3조제1항제1호의"전입세대 정착지원 사업" 지원 대상자가 5명 이상 소속 된(재직 중인) 유관기관·기업	· 1명당 지원금 10만원 지급 (기관·기업별 연간 최대 1,000만원 지급)

※ 단, 지원금을 지급받고 타 시·군·구 전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

○ 지원 절차 및 방법(안 제4조)

-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장에게 지원신청서 제출
- 읍면장이 신청서 사실 확인 후 군수가 지급 결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지방자치법 제66조(의안의 발의) 및 제66조의2(조례안예고)

나. 예산조치 : 200,000천원 정도(관련부서와 합의 예산반영)

다. 조례안예고 : 의견 없음 〔2017.11. 9~11.13.(5일간)〕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저출산,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,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인구증가 시책”이란 성주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.
2. “전입세대”란 타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.
3. “유관기관”이란 국가기관, 교육기관, 군부대, 경찰서, 금융기관,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.
4. “기업”이란 「성주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.
5. “신청인”이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 대상 및 내용) ① 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인구증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1. 전입세대 정착 지원 사업
2. 인구증가 시책 유공 유관기관·기업 지원 사업
3.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

② 제1항 각 호의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③ 별표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타 시·군·구 전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④ 별표에 따른 지원은 현금 또는 성주사랑·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 신청 및 절차) ①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(이하 “신

청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관할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읍·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지급하고, 별지 제2호서식의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)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제6조(포상)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민간인, 기관·기업 등에게「성주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각각 이 조례 시행 이후 군에 전입한 자부터 적용한다.

【별표】

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시책명	지 원 대 상	지 원 내 용	비고
전입세대 정착지원 사업 (제3조제1항제1호)	전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타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 관련 법령에 따라 군으로 전입한 후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	· 전입세대에 대해 1명당 지원금 10만원 지급 (세대별 최대 50만원 지원)	
인구증가 시책유공 유관기관·기업 지원 사업 (제3조제1항제2호)	제3조제1항제1호의“전입세대 정착지원 사업”지원 대상자가 5명 이상 소속 된(재직 중인) 유관기관·기업	· 1명당 지원금 10만원 지급 (기관·기업별 연간 최대 1,000만원 지원)	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

(□ 전입세대 정착지원 사업 □ 인구증가 시책 유공 유관기관·기업 지원 사업)

<table>
<tr><td rowspan="3">신청인</td><td>주 소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생년월일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전화번호</td><td>자 택</td><td></td><td>휴대전화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8">세 부 신 청 사 항</td></tr>
<tr><td rowspan="8">신청사항</td><td rowspan="6">전입세대
정착지원 사업
(명)</td><td>관 계</td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2">생년월일</td><td colspan="2">전입일자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인구증가 시책 유공 유관기관·기업 지원 사업
(명)
※유입실적 세부명단 별지 제출</td><td>기업명</td><td>대표자</td><td colspan="4">주 소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지원금 신청 계좌</td><td colspan="6">금융기관 : 계좌번호 : 예금주 :</td></tr>
</table>

「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성주군수 귀하

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.

년 월 일

읍·면장 (인)

□ 제출서류

1. 공통 : 통장사본 1부.
2. 유공 유관기관·기업지원사업 신청 : 사업자등록증, 재직증빙서류(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) 각 1부.

※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.

[뒷면]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자치단체의 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1	(서명 또는 인)
신청인 2	(서명 또는 인)
신청인 3	(서명 또는 인)
신청인 4	(서명 또는 인)
신청인 5	(서명 또는 인)
대리 신청인	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처리 동의서

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하고자 하오니,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. 단, 신청인이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□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

❍ 「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라 "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" 제출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.
-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관내 거주기간, 전입가족 현황, 계좌번호, 그 밖에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

❍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(인종 및 민족, 사상 및 신조, 출신지 및 본적지,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, 건강상태 등)는 요구하지 않으며,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❍ 개인정보는 "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"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.

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

❍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.
-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시 필요정보(성명, 주소, 전입가족현황, 거주기간 등) 활용

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
❍ 지원일로부터 5년(회계서류 보존)

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, 개인정보를 수집, 활용,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	신청인 1	(서명 또는 인)
	신청인 2	(서명 또는 인)
□ 개인정보 수집, 활용,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	신청인 3	(서명 또는 인)
□ 개인정보 수집, 활용,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	신청인 4	(서명 또는 인)
	신청인 5	(서명 또는 인)
	법정대리인	(서명 또는 인)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대장

(단위 : 천원)

연번	신청일	신청인 인적사항				지원결정 사항			비 고
		성 명 (기관 및 기업 명)	주 소	생 년 월 일	연락처	일 자	지 원 내 용	지 원 금 액	

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저출산,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, 성주군의 지역 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증가 시책 추진과 지원을 위한 지원금 확보가 필요함.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전입세대 정착 지원 및 인구증가 시책 유공 유관기관·기업 지원 등 매년 군비로 지원금이 소요될 예정임.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합계
세입		0	0	0	0	0	0
	소계(a)	0	0	0	0	0	0
세출	○지원금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1,000,000
	소계(b)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1,000,000
□총비용(a-b)		-200,000	-200,000	-200,000	-200,000	-200,000	-1,000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합계
국비							
도비	일반회계						
	○○특별회계						
	○○기금						
시·군비	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1,000,000
민간							
기타							
합계	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200,000	1,000,000

5. 부대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의회사무과 지방행정주사 이호영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단가	사업량	연도별 사업비 내역						비고
				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
합 계			2,000명	1,000,000						
지원금	정착세대 정착지원 사업	100	1,000명	5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
	인구증가 시책지원 유공 유관기관 ·기업 지원사업	100	1,000명	5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